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통합방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서욱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앙 통합방위회의 참석대상 중 소방청장이 참석토록 되어 있던 것을 원활한 통합방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시·도 소방본부장까지 확대하고,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 운영근거가 「통합방위지침」에서 통합방위법으로 상향되면서 이들 기구에 대한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6호 중 “소방청장”을 “소방청장 및 시·도 소방본부장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3(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편성)

-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은 국가정보원장이 조정하여 편성한다.
- ② 정보센터는 시·도 및 시·군·구 정보센터로 구분하고, 합동정보조사팀은 중앙 합동정보조사팀과 시·도 및 시·군·구 합동정보조사팀으로 구분한다.
- ③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간사기관은 국가정보원이 된다. 단, 서울특별시와 시·군·구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) ① (생 략) ②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1. ~ 5. (생 략) 6. 소방청장 7. ~ 10. (생 략) ③ ~ ⑥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3조(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소방청장 및 시·도 소방본부장 7. ~ 10. (현행과 같음) ③ ~ ⑥ (현행과 같음) <u>제18조의3(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편성)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은 국가정보원장이 조정하여 편성한다.</u> <u>② 정보센터는 시·도 및 시·군·구 정보센터로 구분하고, 합동정보조사팀은 중앙 합동정보조사팀과 시·도 및 시·군·구 합동정보조사팀으로 구분한다.</u> <u>③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간사기관은 국가정보원이 된다. 단, 서울특별시와 시·군·구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<u>④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	
연 락 처	(02) 748 - 3459